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5.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5월 8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세열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비 기준경비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짐에 따라 우리 구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조례에 따로 정하여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당직수당은 당직실 상태,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당직시마다 6만원씩 지급(다만,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의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

직근무자에게는 7만원씩 지급)하여 2004년도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었으나, 2014년도부터 당직수당을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 예산편성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급하도록 당직수당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 조례에서 숙직, 휴무일 근무자 구분 없이 당직수당 지급한도액을 일률적으로 6만원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인 당직수당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1항을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를 “당직근무자에게”로 하며,

안 제4조 중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로 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당직수당을 조례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당직수당을 6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한도액을 정함에 따라 2015년 5월 현재 타 자치구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6만원이 22개구, 5만원이 3개구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 당직수당 지급한도액을 6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됨.

○ 또한, 동(同)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당직수당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여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9. ~ 4.8.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고, 향후에도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해당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내려줄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조례를 개정함 보다는 “당직수당을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

라 지급한다”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당직수당조정을 탄력성 있게 하도록 하는 이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